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. 4. 13 선고 2021가단33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13.

주 문

1. 피고와 C가 2021. 10. 27. 별지 표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1. 11. 15. 접수 제186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민규남